

#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금해 드립니다!

월 20만원, 최장 12개월 동안

※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,  
자세한 내용은 하단 및 뒷면 참고



## 지원대상

이혼(미혼)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·모가  
비양육부·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 
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



긴급복지지원을  
받은 뒤에도  
생활곤란



실직,  
폐업으로  
소득상실



손자녀  
양육하는  
조부모



중증질환  
및 부상 등  
위기상황



난방, 전기,  
수도 공과금 연체  
등 위기상황

## 지원요건

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·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
  - 신청인(채권자)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하신 분
  -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분
  -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(차상위계층)인 분
- ※ 세부요건은 뒷면 체크리스트 참고

## 지원내용

- 지원금액 :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
※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원 지급
- 지원기간 : 9개월  
(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)

## 신청방법

- 온라인 :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
(www.childsupport.or.kr)
- 오프라인 :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 
(06578)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, 5층  
(서울지방조달청사)

## 문의

양육비이행관리원  
1644-6621

뒷면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~!

##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

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														
1. 이혼/미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?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
※ 미성년 자녀 : 2022년 기준, 2003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														
2.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지만, 양육비를 못받고 계신가요?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
※ 집행권원 :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(판결문, 부담조서 등) 예) 매월 27일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														
3. 양육비이행관리원에 “양육비 이행확보 지원” 신청을 하셨나요?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
※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: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·추심 등 지원 ☎ 1644-6621														
4. 현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생계급여(기초생활수급자)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가요?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
※ 이미 생계급여(기초생활수급자)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는 지원 가능														
5.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가요?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(차상위)이신가요?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가구원 수</th> <th>2인 가구</th> <th>3인 가구</th> <th>4인 가구</th> <th>5인 가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준중위소득 50% (2022년 기준)</td> <td>1,630,043원</td> <td>2,097,351원</td> <td>2,560,540원</td> <td>3,012,258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가구원 수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기준중위소득 50% (2022년 기준)	1,630,043원	2,097,351원	2,560,540원	3,012,258원
가구원 수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									
기준중위소득 50% (2022년 기준)	1,630,043원	2,097,351원	2,560,540원	3,012,258원										
6.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나요?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
①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(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, 교육지원, 그 밖의 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)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병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,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(외)조부모인 경우 ④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,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⑤ 난방, 전기,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														

위의 기준에 “모두” 충족 시,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.

## 제출서류

-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(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)
- 집행권원 1통
-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 
(없을 경우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/ 차상위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/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1통)
-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
- 주민등록등본 1통
- 위 지원요건 6의 ①~⑥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

## 지원절차

### 01 신청/접수

- 상담
- 신청서 접수

### 02 서류요건 확인

- 제출서류 검토
- 요건 적합여부 확인

### 03 심사 및 지급

-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- 지급/부지급 통보
- 긴급지원금 지급

### 04 구상권 행사

- 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